제 2 7 2 회 거 창군 의 회 임 시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(2023.9.6.)

#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

총 무 위 원 회

[전문위원 박 혜 진]

<의안번호 제2023 - 95호>

# -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¬ -**검 토 보 고 서**-

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. 8. 24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22. 8. 24.

### 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·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기금유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.

## 3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 제159조」재산과 기금의 설치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

  L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 초과

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- 「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4조 재정 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

## 4. 기금운용 계획

## 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(안)

○ 총 괄 [단위: 천원]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목	변 경 (2회 추경)	당 초 (2023년 당초)	증 감	항 목	변 경 (2회 추경)	당 초 (2023년 당초)	증 감
합 계	137,009,061	137,138,257	△129,196	합 계	137,009,061	137,138,257	△129,196
全岛参	134,765,859	134,763,067	2,792	수화사	110,509,061	137,138,257	△26,629,196
이자수입	2,243,202	2,375,190	△131,988	이자수입	26,500,000		26,500,000

○ 계 정 별 (단위: 천원)

	구분	′22년도말 <u>조성액</u> ⓐ	'23 <del>L</del>	'23년도말			
기금명			수입(6)	지출ⓒ	증감 @=b-c	<u>조성액</u> e=d)+a	비고
재정안정화 계정	당초	122,265,110	2,169,824	0	2,169,824	124,434,934	
	변경	122,267,882	2,037,743	26,500,000	△24,462,257	97,805,625	
	증감	2,772	△132,081	26,500,000	△22,292,433	△26,629,309	
통합계정	당초	12,497,957	205,366	0	205,366	12,703,323	
	변경	12,497,977	205,459	0	205,459	12,703,436	
	증감	20	93	0	93	113	

○ 수입계획 (단위: 천원)

-11	구분	수 입 변 경 계 획					
기 금 명		계	이자수입	예치금회수	전입금(예수금)		
재정안정화 계정	당초	124,434,934	2,169,824	122,265,110	0		
	변경	124,305,625	2,037,743	122,267,882	0		
	증감	△129,309	△132,081	2,772	0		
통합계정	당초	12,703,323	205,366	12,497,957	0		
	변경	12,703,436	205,459	12,497,977	0		
	증감	113	93	20	0		

○ 지출계획 (단위: 천원)

	구분	지 출 변 경 계 획				
기 금 명		계	예치금	전출금		
재정안정화 계정	당초	124,434,934	124,434,934	0		
	변경	124,305,625	97,805,625	26,500,000		
	증감	△129,309	△26,629,796	26,500,000		
통합계정	당초	12,703,323	12,703,323	0		
	변경	12,703,436	12,703,436	0		
	증감	113	113	0		

## 5. 검토의견

- 이 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6조 및 「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0년에 설치하였음
- 재정안정화계정은 군의 세입이 감소한 경우, 재해발생 또는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대규모 사업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자수입 예상액이 당초보다 약 1억 3천만원 감소 하였고, 이번 2회 추경에 26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자하여 23년도말 조성액은 약 978억원으로 예상함
- 통합계정의 경우 이자가 9만 3천원 증가하여 23년도말 조성 액은 약 127억원으로 예상함
- 이 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계획대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 6. 참고자료

## ● 관련법령 발췌

#### 지 방 자 치 단 체 기 금 관 리 기 본 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-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-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-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#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-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 하 이 조에서 "예수금"이라 한다)
-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-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-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- 3. 통합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필요한 경비
-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

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-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- 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-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 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9.]

####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기획예산담당관) [시행 2020. 9. 29.]

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(이하 "재정안정화 계정"이라 한다)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- 1.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따른 금액. 다만, 가목의 경우 "합"을 "증가율"로 "평균금액의 110퍼센트"를 "평균 증가율의 10퍼센트"로 본다.
-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의3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다. 「지방교부세법」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: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2.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3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##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##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